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)의 주식등의 가액(“합병교부주식등”)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㉡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(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함. “합병포합주식등”)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 ㉢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, 그 법인세(감면세액 포함)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§88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